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보험상품 사업비 공시 강화

- 금감원은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, 위험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공시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상품 공시지침에 반영한 후 금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적용하기로 결정함.
 -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대폭 증진되어 저축성 변액보험 이외의 보험상품도 공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 내역 및 수준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함.

-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공시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하고, 동시에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를 상호비교가 용이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시행할 계획임.
 -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보험계약 체결·유지시 발생하는 계약체결비용(신계약비), 계약관리비용(유지비·수금비), 위험보험료, 수수료 등의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화함.
 - 금번 공시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.
 - 보장성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 및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통한 공시를 시행하도록 함.
 - 보험료 지수란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며, 연간보험료는 보장위험별로 1년 동안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함.

- 이번 공시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또한, 회사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합리적인 효율책정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(보험상품의 사업비 등 공시강화 등, 금감원 등, 9/2)